



제439회국회(정기회)
제1차 국토교통위원회

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인력의 근로조건, 처우 및 규모 등을 철도사업 면허의
기준으로 추가 등〉

■ 윤종오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8055호)

2026. 9.

국 토 교 통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오 세 일

목 차

□ 윤중오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8055호)	1
Ⅰ. 제안경위	1
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Ⅲ. 검토의견	2
1. 인력의 근로조건, 처우 및 규모 등을 철도사업 면허의 기준으로 추가 등(안 제6조)	2

□ 윤종오의원 대표발의(2218055)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윤종오의원 등 12인
2. 제 안 일 : 2026. 4. 2.
3. 회 부 일 : 2026. 4. 3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철도운송사업의 면허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면허의 기준은 안전성, 수송수요, 재정적 능력 및 차량 등 기본적 요건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.

특히 GTX 등 광역철도와 같이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철도운수종사 인력의 근로조건·처우 및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제도적 관리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철도사업 수행 인력에 관한 기준을 면허요건에 포함하도록 하여 안전한 철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6조).

Ⅲ. 검토의견

1. 인력의 근로조건, 처우 및 규모 등을 철도사업 면허의 기준으로 추가 등(안 제6조)

개정안은 철도사업의 면허 기준으로 사업수행인력의 근로조건, 처우 및 규모 등을 추가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관련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도록 하며, 철도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6조(면허의 기준)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6조(면허의 기준) ①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근로조건, 처우 및 규모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</u> ② <u>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철도운수종사자의 건강 및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무형태·인력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운수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

현행	개정안
	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면허 등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가. 검토의견

현행법 제5조¹⁾는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고, 같은 법 제6조에서는 면허의 기준으로 철도사업이 철도교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, 운행 계획의 적합성,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, 사업에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 등을 명시하고 있음.²⁾

현행법 시행규칙 제3조³⁾에서는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

1) 「철도사업법」

제5조(면허 등)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.

2) 「철도사업법」

제6조(면허의 기준)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철도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
2. 해당 사업의 운행계획이 그 운행 구간의 철도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 및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
3. 신청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을 것
4. 해당 사업에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(臺數), 사용연한 및 규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3) 「철도사업법 시행규칙」

철도사업면허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, 법인설립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, 사업계획서에는 철도운수종사자의 자격사항 및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, 종사자의 근로조건·처우, 인력의 규모 등을 철도사업 면허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.

개정안은 철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근로조건·처우 및 규모를 철도사업 면허의 기준에 명시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관련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, 철도운수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철도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철도의 안전한 운행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.

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먼저 철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규모는 철도 운행의 안전성 및 이용자 편의성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철도사업 면허의 기준으로 명시

제3조(철도사업의 면허 등)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서
 2. 법인설립계획서(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
 3. 당해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
 4. 신청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
-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**사업계획서**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운행구간의 기점·중점·정차역
 2. 여객운송·화물운송 등 철도서비스의 종류
 3.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·형식 및 확보계획
 4. 운행횟수, 운행시간계획 및 선로용량 사용계획
 5. 당해 철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(공익서비스비용 및 철도시설 사용료의 수준을 포함한다)
 6. 철도역·철도차량정비시설 등 운영시설 개요
 7. **철도운수종사자의 자격사항 및 확보방안**
 8. 여객·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 사업수지

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.

실제로 현행 철도사업 면허심사 과정에서도 「철도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‘철도운수종사자의 자격사항 및 확보방안’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,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인력규모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함. 참고로, 「도시철도법」 제27조⁴⁾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으로 “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시철도차량 및 운영인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을 면허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.

다음으로, 인력의 근로조건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철도사업 면허의 기준으로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, 근무형태·근로시간 등 일부 근로조건은 철도종사자의 피로도 및 업무수행 능력 등에 영향을 미쳐 철도 운행의 안전성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,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할 때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.

다만, 개정안은 철도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근무형태·근로시

4) 「도시철도법」

제27조(면허의 기준)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당 사업이 도시교통의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
2.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시철도차량 및 운영인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「도시철도법 시행규칙」 별표1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

구분	면허기준
운영인력	-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시철도차량의 종류·대수 및 운행계획 등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철도종사자를 보유할 것

간 등에 한정하지 않고 ‘근로조건, 처우 및 규모 등’을 포괄적으로 면허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. 철도사업 면허는 철도교통의 안전, 운행계획의 적합성,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 등 철도사업 수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, 임금·복리후생 등 철도안전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조건 및 처우에 관한 사항까지 면허기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참고로, 항공·여객자동차·해상여객 등 다른 교통운송사업의 법률상 면허기준에 종사인력의 근로조건 및 처우에 대하여 명시한 사례는 없음.⁵⁾

5) 「항공산업법」

제8조(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)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 8. 27.>

1. 해당 사업이 항공기 안전, 운항승무원 등 인력 확보 계획 등을 고려 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
2. 항공시장의 현황 및 전망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
3.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출 것
4.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
 - 가.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
 - 나.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 - 다.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제5조(면허 등의 기준)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
2. 최저 면허기준 대수(臺數), 보유 차고 면적, 부대시설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, 교통사고 유무,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
「해운법」

제5조(면허기준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

1. 삭제
2.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
3.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
4.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
5.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여객선등의 선령 및 운항능력, 자본금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

또한, 개정안은 면허기준의 적용대상과 의견청취 대상의 범위가 불일치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 안 제6조제1항제5호는 ‘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’ 전체의 근로조건·처우 및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면허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,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준을 정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을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‘철도운수종사자’⁶⁾로 한정하고 있음⁷⁾.

한편,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제6조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철도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, 기존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⁸⁾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⁹⁾은 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그 변경내용이 제

기준에 알맞을 것

6) 「철도사업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7. “철도운수종사자”란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승무(乘務, 동력차 운전과 열차 내 승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.

7) 한국철도공사 전체 임직원 수는 32,957명(2026년 1분기 기준)인 반면, 철도운수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원(열차승무, 운전,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)은 2025년 기준 12,002명임.

8) 「철도사업법」

제12조(사업계획의 변경) ①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.

1.~4. (생략)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·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9) 「철도사업법 시행규칙」

제8조(사업계획의 변경절차 등) ① 철도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(변경하려는 사항이 인가사항인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)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6조에 따른 면허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기존 철도사업자도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개정된 제6조의 면허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.

종합컨대, 철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규모와 철도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무형태 등을 면허기준에 반영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, 근로조건·처우를 면허기준에 포함하는 것의 적정성과 면허기준에 포함시킬 범위를 검토하고, 제1항·제2항 간 규율대상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나. 국토교통부 의견

근로조건 및 처우는 노사간 합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어 면허기준이 될 경우 변동 시마다 사업계획을 갱신 승인받아야 하는 등 안정성 저해가 우려됨.

또한 근로조건 등 합의 지연으로 면허 발급이 지체될 경우 신규노선의 개통 및 운영 일정이 미뤄져 국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음.

한편, 타 운송업(항공, 해운 등) 면허도 면허기준으로 인력의 근로조건 및 처우에 대하여 규정한 사례는 없음.

1. ~ 3. (생략)

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인력 규모와 관련하여 면허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현행 ‘사업계획서’는 종사자의 자격사항 및 확보방안을 필수로 포함하고 있어 인력규모도 함께 검토하고 있고, 면허발급 이후 근무형태, 적정인력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철도안전체계(변경)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.

문 의 처
02)6788-5582